

『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의 2 (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)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공원면적의 70%이상을 기부채납, 30%이하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
-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약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(안 제3장)
 - 제8조 ~ 제10조 기부채납의 대상·시기·조건
-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(안 제4장)
 - 제11조 부지 매입비 등 납입

○ 공원시설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0장)

- 제18조 ~ 제25조 설계·인허가, 실시계획인가, 공사기간, 공사의 착수,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, 공정관리, 사업이행보증금, 구미시장의 감독

○ 구미시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장)

- 제26조 행정적 지원

○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(안 제12장)

- 제28조 ~ 제31조 위험배분의 원칙,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, 구미시장의 귀책사유 및 처리,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

○ 협약의 종료(안 제13장)

- 제32조 ~ 제3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,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, 협약해지시의 효과,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

○ 권리의 처분(안 제14장)

- 제36조 ~ 제38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, 비공원시설 사업의 공동 시행,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

○ 분쟁의 해결(안 제15장)

- 제39조 ~ 제40조 분쟁의 해결, 중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2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
○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」은

-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협약내용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
-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인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공원 조성 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,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우려,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